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246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2. 18. 양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2. 18.

라. 상정일자

-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정천모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복지·체육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조성의 전문성 제고와 수질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팀 신설·통합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담당관 폐지(안 제4조)
- 체육지원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변경 및 업무 조정(안 제5조제1항 ~ 제2항)
- 환경관리과를 기후환경과로 명칭변경(안 제6조제1항)
- 수질관리과 신설 및 업무 조정(안 제6조제1항 ~ 제2항)
- 공공시설과 신설(안 제9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우현주)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제정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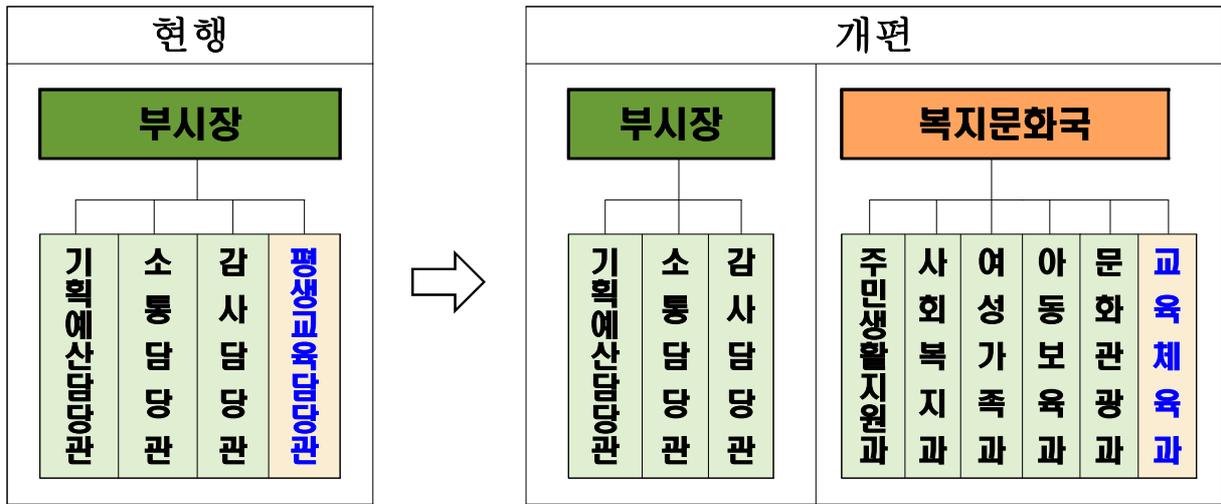
- 복지·체육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조성의 전문성 제고와 수질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팀 신설·통합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다. 조문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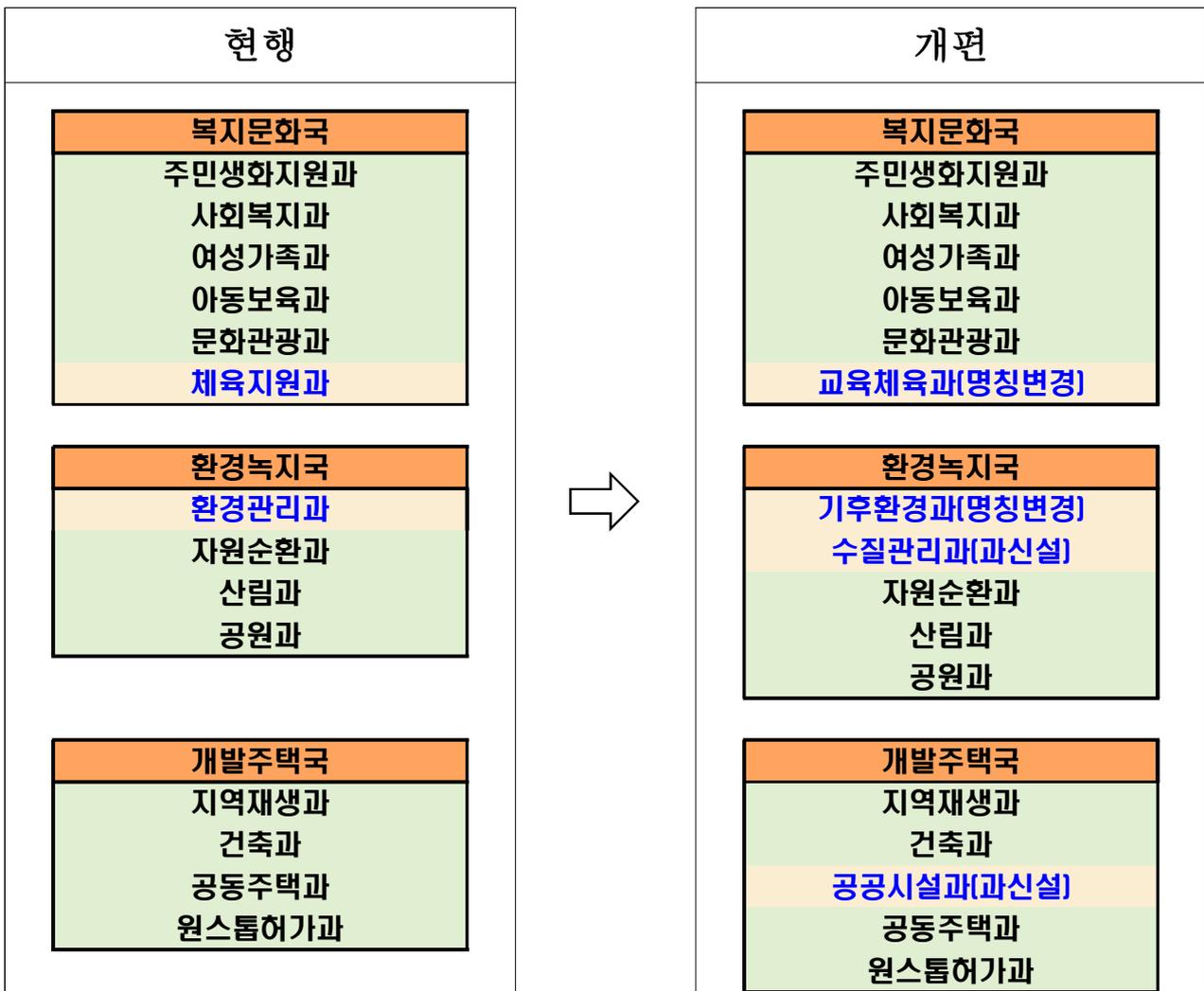
-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6국 4담당관 49과 262팀 ⇨ 6국 3담당관 51과 266팀(1담당관 감 2과 4팀 증)

구 분	본 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개편전	6국 4담당관 30과 145팀	1출장소 5과 21팀	2직속기관 6과 25팀	4사업소 6과 23팀	13읍면동 2과 48팀
개편후	6국 3담당관 32과 149팀	1출장소 5과 19팀	2직속기관 6과 25팀	4사업소 6과 23팀	13읍면동 2과 50팀
증 감	1담당관 감 2과 4팀 증	2팀 감	-	-	2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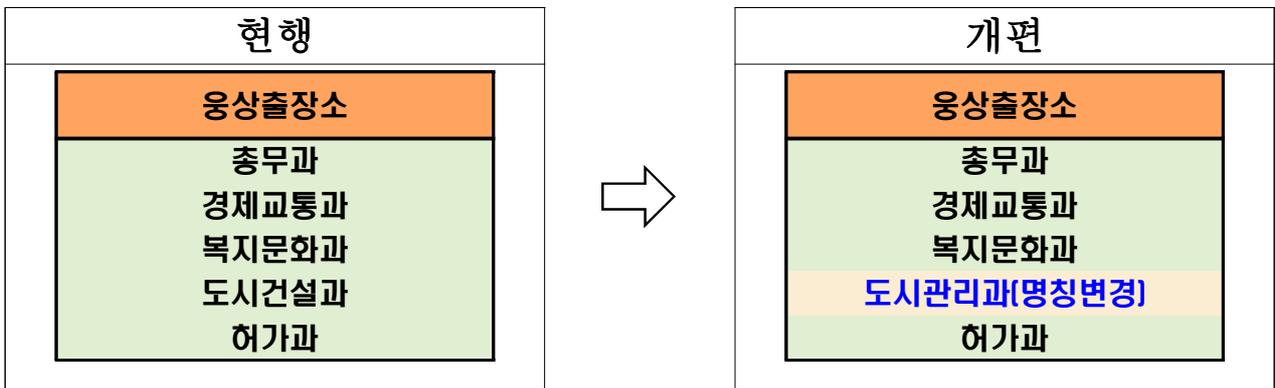
○ 안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담당관을 폐지함.



○ 안 제5조에 따라 체육지원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 따라 환경관리과를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질관리과를 신설하며 안 제9조에 따라 공공시설과를 신설함.



- 안 제5조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평생학습, 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안 제6조에 따라 환경녹지국에 공단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질 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을 신설하는 반면, 안 제23조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소에 공단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시행규칙 안 제15조에 따라 출) 도시건설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함.



라. 종합의견

<가. 조직개편의 목적>

- 공공시설과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체육·문화 공공시설 구성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질관리과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건강한 식수원을 확보하고자함.
- 강서동과 덕계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맞춤형 복지업무를 강화하고 서창도서관 개관,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함.
- 웅상출장소의 도시건설과를 도시관리과로 변경하여 대규모 토목사업, 도로 개설 등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되, 도시계획도로개설의 보상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지 아니함.
-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서를 신설·통합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은 필요함.

<나.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부결>

- 지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때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직개편 조례안이 부결됨.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응상출장소의 1개과(도시건설과)가 폐지되고 3개 팀과 12명의 정원이 감소됨. 도시계획도로개설 업무와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 등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응상지역민의 민원불편이 예견되어 부결되었음.
-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1.) 때 조직개편 관련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부결됨.
-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12.04.) 때 조직개편 관련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부결됨.

<다. 문제해결 및 향후과제>

-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때 조직개편 조례안은 응상지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역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반대여론은 없음.
- 다만, 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과 업무이관은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집행부에는 행·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향후 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실 있는 조직 관리에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
----------	-----

제출연월일 : 2020. 12. 18.

제출자 : 양산시장

1. 제안이유

- 가. 복지·체육·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조성의 전문성 제고와 수질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 나.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팀 신설·통합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담당관 폐지(안 제4조)
- 나. 체육지원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변경 및 업무 조정(안 제5조제1항 ~ 제2항)
- 다. 환경관리과를 기후환경과로 명칭변경(안 제6조제1항)
- 라. 수질관리과 신설 및 업무 조정(안 제6조제1항 ~ 제2항)
- 마. 공공시설과 신설(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기 타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4) 입법예고(2020. 12. 7. ~ 12. 1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지원과”를 “교육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구성”을 “확충”으로 한다.

8. 평생학습, 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환경관리과”를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단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질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제9조제1항 중 “공동주택과”를 “공공시설과, 공동주택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예방과”를 “예방, 대응,”으로 한다.

제23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과장”을 “수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관리팀장”을 “수질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각각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u>감사담당관</u>, 평생교육담당관을 둔다.</p> <p>제5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u>체육지원과</u>를 둔다.</p> <p>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8.·9. (생략)</p> <p>10. 체육시설 <u>조성</u>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제6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u>환경관리과</u>,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p> <p>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략)</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 <u>감사담당관</u>-----.</p> <p>제5조(복지문화국) ① ----- ----- ----- -- <u>교육체육과</u>-----.</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평생학습, 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u></p> <p>9. <u>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u></p> <p>10.·11.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p> <p>12. ----- <u>확충</u> ----- -----</p> <p>제6조(환경녹지국) ① ----- - <u>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u>----- -----.</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신 설>

<신 설>

9. ~ 16. (생 략)

제9조(개발주택국) ① 개발주택국에 지역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원스톱허가과를 둔다.

② (생 략)

제17조(소관 사무) ① (생 략)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 및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③ (생 략)

제23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 파. (생 략)

하. 공단 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9. 공단 오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질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 18. (현행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제9조(개발주택국) ① -----
----- 공공시설
과, 공동주택과-----.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관 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예방, 대응,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소관 사무) -----

-----.

1. -----

가. ~ 파.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